

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85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시민과 휴일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우리민족 고유 세시풍속을 체험할 기회제공을 위해 박물관·문화촌 휴관일 조정
- 속초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서민경제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속초시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
- 성실한 국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한 관람객에 대한 무료 관람 기회제공

2. 주요내용

가. 박물관·문화촌의 휴관일 개정 (안 제7조)

- 1) 고향을 방문한 출향시민과 명절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박물관·문화촌 관람과 문화체험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날·추석 당일 휴관 규정 삭제 (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)

나. 박물관·문화촌 무료 관람 규정 신설 (안 제10조)

- 1) 속초시민의 사기진작과 속초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속초시민에 대하여 매주 일요일과 설날·추석·속초시민의 날 당일에 한하여 무료 관람 규정 신설 (제10조제1항제9호)
- 2)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한 주권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표참여자 무료 관람 규정 신설 (제10조제1항제10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결과 : 2008. 10. 7 ~ 10. 27

2)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: 특이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관련공문서 : 붙임

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·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매주 월요일(단, 박물관 관련 행사로 인해 개관할 때에는 그 다음날)

제10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,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속초시민(속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) 단, 매주 일요일과 설날·추석·속초시민의 날 당일에 한한다.
10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,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개관 및 휴관) ① (생략) ②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1월 1일 2. <u>설날당일 하루</u> 3. <u>추석당일 하루</u> 4. <u>매주 월요일</u> 5. (생략)	제7조(개관 및 휴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〈삭제〉</u> 3. <u>〈삭제〉</u> 4. <u>매주 월요일(단, 박물관 관련 행사로 인해 개관할 때에는 그 다음날)</u> 5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 1. ~ 8. (생략) <u>〈신설〉</u> <u>〈신설〉</u> 9. <u>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	제10조(무료관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속초시민(속초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소지자) 단, 매주 일요일과 설날·추석·속초 시민의 날 당일에 한한다.</u> 10. <u>「공직선거법」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8조,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</u> 11. <u>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
제21조 (개관)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25조 (관람료와 이용료)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,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.

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,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

1970. 4. 26
문화공보부령 제17호

제2조 (개관 및 휴관)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,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. <개정 1993.6.29>

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1980.9.4, 1984.3.7, 1993.6.29, 2002.5.9>

1. 1월 1일

2. 월요일(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는 화요일). 다만, 설 또는 추석 연휴 기간중의 월요일을 제외한다.

3. 국립중앙박물관장·지방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(이하 "박물관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휴관일

제5조 (무료관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80.9.4, 1983.9.19, 1984.8.30, 1989.3.20, 1993.6.29, 1998.6.19, 2002.5.9, 2005.5.30, 2005.12.23>

1. 국민 및 그 수행자
2.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
3. 6세 이하인 자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6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7. 65세 이상인 노인
8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9. 기타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②국립중앙박물관장과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02.5.9, 2003.12.10>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(선거의회과장)

(경유)

제목 투표참여 촉진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협조요청

1.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위원회에서는 2008. 2. 29 개정된 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선거일부터 4. 30까지 국공립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(2,000원까지)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시행하였으나,

3.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기간이 짧아 이용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, 이용기간도 한 달이 채 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던 바,

4. 향후 각종 공직선거(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포함)에서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 후 3개월 내에서 국공립 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(2,000원까지)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5.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·군·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는 바,

6. 귀 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관련조례가 불임의 개정문안 예시와 같이 빠른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·안내하여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조례개정 예시 1부. 끝.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
★주무관

행정사무관

공직선거과장

선거국장 전결 06/02

협조자 서기관

시행 공직선거과-2264

(2008.06.02.)

접수 선거의회과-184

(2008.06.02.)

우 427-7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-3 (2층 209호)

/ <http://www.nec.go.kr>

전화 (02)503-2093

전송 (02)507-2631

/ bkcho@nec.go.kr

/ 공개

조례 개정 문안(예시)

〈예시 1〉

○○군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군유림내에 조성된 휴양시설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중략)

제6조(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.

1. 국민 및 그 수행자
2.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3.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
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5.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그 보호자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
7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8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(신설)
9. 그 밖에 관리·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〈예시 2〉

〇〇시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,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중략)

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: 50퍼센트 감면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)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
2. 8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: 50퍼센트 감면

3.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(부제참여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)

가. 10부제인 경우 : 100분의 20감면

나. 5부제·요일제인 경우 : 100분의 30감면

4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카)를 부착한 차량 : 1년간 100퍼센트 감면

5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 : 2,000원까지 감면(신설)